

<p>提案說明에 이어서 補充說明하신 우리 財經委 常任委員長 朴尙東議員長님께서 常任委 審査 때 法과 條例에 너무나도 違背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擔當局長인 財務局長에게 호통을 치면서 警告도 하고 謝過까지 勸誘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常任委 豫備審査 때 그 잘못 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 法과 條例와 規則에 違背된 內容이 確認이 됐고 발견이 되었습니다.</p> <p>그런데 그러한 사실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르게 말씀을 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豫算과 관련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豫算과 관련이 않된다는 것이 財務局 측의 答辯으로 常任委 豫備審査 때 確認이 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p> <p>감사합니다.</p> <p>○議長 金瓏會 이상으로 討論을 마치고 그러면 表決에 들어 가겠습니다.</p> <p>그러면 本 件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분들은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p> <p>(起立表決)</p> <p>앞주세요.</p> <p>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保留하시는 議員님들은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起立表決)</p> <p>앞주시기 바랍니다.</p> <p>集計가 끝나는 대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p> <p>(場內騷亂)</p> <p>○議長 金瓏會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89名 贊成 45名, 反對 20名, 棄權 24名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計算 틀렸어요 다시 計算해 보세요」하는 議員있음)</p> <p>計算은 틀림없어요.</p> <p>89명 맞습니다.</p> <p>다 세어서 集計 다 끝났어요.</p> <p>(場內騷亂)</p> <hr/> <p>(參 照)</p>	<p>'91市有財產管理計劃變更(追加)同意(案)</p> <p style="text-align: center;">審査報告書</p> <p>1. 審査經過</p> <p>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1年 10月 11日, 서울特別市長</p> <p>나. 回附日字: 1991年 10月 14日</p> <p>다. 上程日字: 第51回 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第1次 財務經濟委員會 (1991年 10月 17日) 上程, 質疑, 答辯, 討論, 議決</p> <p>第51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 (1991年 10月 23日) 上程, 一部 同意案 議決</p> <p>第52回 臨時會 第1次 財務經濟委員會(1991年 11月 21日) 上程, 質疑, 答辯, 討論, 議決</p> <p>2. 提案說明(第51回 臨時會)의 要指 (提案說明: 배문환 財務局長)</p> <p>가. 提案理由</p> <p>地方財政法 第77條 및 서울特別市 公有財產管理條例37條第1項에 依據 '91市有財產管理計劃에 依據 追加計劃을 樹立, 서울特別市 議會의 議決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임.</p> <p>나. 主要內容</p> <p>○'91市有財產管理計劃을 執行함에 있어서 都市計劃事業 施行 및 公有財產 提供 등과 關聯하여 새로운 行政需要에 適期 供給하기 위하여 都市計劃事業 施行者, 서울特別市 教育廳 및 他地方自治團體등에 市有地 賣却을 內容으로 하는 '91市有財產管理計劃 變更 同意를 要請함</p> <p>—管理計劃 變更(追加)對象 財產</p> <p>• 賣却: 93筆地 42,029.4m²</p> <p>○參考事項</p> <p>—'91市有財產管理計劃 變更(追加)對象 財產중에서 讓與分 10筆地 2,970.7m²는 第51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時 同意되었음.</p>
--	---

3. 専門委員 檢討報告(第51回 臨時會)의 要旨
(專門委員: 안석수)

- 市有財産管理計劃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所管의 豫算과 事業豫定에 따라 市有財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을 위하여 年初에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管理·處分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 이번 서울特別市長으로 同意 要請된 市有財産 賣却分 93筆地 42,029.4m²중 都市計劃事業 施行者 등에 賣却分 17筆地 9,054.7m²는
 - 都市計劃事業 施行者, 宅地開發事業 施行者 및 住宅組合에게 賣却하는 것으로 法上 別분계가 없으며(都市計劃法 第60條, 宅地開發 促進法 第26條, 住宅建設促進法 第24條)
-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 賣却하고자 하는 58筆地 25,958m²는
 -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에게 共用 또는 公共用으로 賣却하는 것으로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95條에 의거 可能하며
- 占有者, 托지인절주, 撤去 移住民 등에 賣却하고자하는 18筆地 7,016.7m²도
 -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88條 및 95條에 의하여 雜種財産을 貸付 받은 者와 隣接 土地所有主에게 그리고 撤去 任民에게 住居用으로 隨意賣却할 수 있음.

4. 審査結果

- 原案可決(재석 9명 찬성)

5. 審査報告書 有添書類

- '91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追加)同意(案)

'91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追加)同意(案)

提出年月日: 91. 10. 11

提出者: 서울특별시장

1. 提案理由

地方財政法 第77條 및 서울特別市 公有財産管理條例 第37條 第1項에 依據 91. 市有財産管理計劃에 대한 變更計劃을 樹立, 서울特別市 議會의 議決을 얻어 시행키위한 것임.

2. 主要內容

'91. 市有財産 管理計劃을 執行함에 있어서 都市計劃事業施行 및 公用財産 提供등과 關聯하여 새로운 行政需要에 適期 供給하기 위하여 都市計劃事業施行者 및 서울特別市教育廳·他地方自治團體등에 市有地의 賣却을 內容으로 하는 '91市有財産 管理計劃變更 同意를 요청합니다.

- 管理計劃變更(追加) 對象 財産
 - 賣却 93筆地 42,029.4m²

'91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追加)同意(案)

都市計劃事業施行者 및 서울特別市教育廳·他地方自治團體등에 市有地의 賣却을 內容으로 하는 '91市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追加)을 地方財政法 第77條 및 서울特別市 公有 財産管理條例 第37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 同意한다.

- 管理計劃變更(追加) 對象 財産
 - 賣却 93筆地 42,029.4m²

※管理計劃 變更(追加) 對象 財産目錄 別添

'91市有財産 管理計劃

○當 初

區 分	筆地·층수	面積(m ²)	金額(천원)	
取 得	計	土地 14	27,849.60	6,352,398
		建物 3	4,159.68	1,925,569
	買 入	土地 12	27,675.00	6,227,872
		建物 3	4,159.68	1,925,569
	交換取得	土地 2	174.60	124,526
		建物		
處 賣 却 分	計	土地 162	55,211.40	42,996,916
		建物 4	3,904.90	553,871
	賣 却	土地 150	52,066.10	42,864,626
		建物 4	3,904.90	553,871
	交換處分	土地 2	174.60	132,290
		建物		
讓 與	土地 10	2,970.7	-	

○變 更(追加)					○變 更 後				
區 分		筆地・동수	面積(m ²)	金額(천원)	區 分		筆地・동수	面積(m ²)	金額(천원)
處	計	土地 93	42,029.4	19,221,136	取	計	土地 14	27,849.60	6,352,398
		建物					建物 3	4,159.68	1,925,569
分	賣 却	土地 93	42,029.4	19,221,136	得	買 入	土地 12	27,675.00	6,227,872
		建物					建物 3	4,159.68	1,925,569
						交換處分	土地 2	174.60	124,526
						寄附採納	土地		
						讓 與	建物		
					處	計	土地 255	97,240.80	62,218,052
							建物 4	3,904.90	553,871
					分	賣 却	土地 243	94,095.50	62,085,762
							建物 4	3,904.90	553,871
						交換處分	土地 2	174.60	132,290
						讓 與	土地 10	2,970.70	
						建物			

'91年度 市有財産 管理計劃變更(追加) 財産目錄				
○總 括 表				
賣 却	○計 : 93筆地 42,029.4m ² 19,221,136천원			
	(都市計劃事業施行者)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17筆地 9,054.7m ² 8,736,230천원	58筆地 25,958m ² 4,710,760천원	18筆地 7,016.7m ² 5,774,14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宅地 開發事業施行者 大韓住宅公社-4筆地 1,044.0m² • 綜合醫療施設 서울中央病院-8筆地 6,505.9m² • 流通業務施設 대신석유-1筆地 138.5m² • 노원역환승주차장 미도파-2筆地 778.2m² • 住宅組合 新東亞火災保險-1筆地 28.0m² 整補稅務署-1筆地 560.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市教育廳 (瑞草電子 工業高等學校) 4筆地 11,480m² • 果川市(公共用) 53筆地 11,978m² • 城南市(取水揚敷地) 1筆地 2,50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占有者 한성대학 3筆地 4,967.7m² 김우영 2筆地 113.8m² • 인접주(건축부접합토지) 10筆地 1,053.2m² • 撤去移住民(김장수) 3筆地 882m² 	

(다음 페이지에 계속)

'91市有財産 管理計劃變更 財産目錄(賣却)

(단위: 면적 m², 금액: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매각대상 면적	추정가액 (공시지가 기준)	매각 시기	매각사유	매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면적						
1	대	노원구 월계동 846-1	567	567	226,800	허반기	특지 개발지	대한주택공사	지방계정별시행령 제 95조항2호
2	"	" 867-13	235	235	94,000	"	"	"	"
3	"	" 867-15	106	106	42,400	"	"	"	"
4	"	" 867-16	136	136	54,400	"	"	"	"
5	"	송파구 풍납동 429-1	440.7	440.7	396,600	"	종합의료 시설	서울 중앙병원	"
6	"	" 422-1	248.3	248.3	223,470	"	"	"	"
7	"	" 420	2,605.4	2,605.4	2,344,800	"	"	"	"
8	"	" 428	63.8	63.8	57,420	"	"	"	"
9	"	" 418	54.6	54.6	49,140	"	"	"	"
10	"	" 427	2,791.6	2,791.6	2,512,400	"	"	"	"
11	"	" 469-7	145.9	145.9	131,340	"	"	"	"
12	"	" 425-1	155.6	155.6	140,040	허반기	종합의료 시설	서울 중앙병원	"
13	중종지	서초구 양재동 216-6	138.5	138.5	355,940	"	유통업무 시설	대신 식육	"
14	대	노원구 상계동 617-6	705	705	28,200	"	노원역환승주차장	(주)미도파	"
15	"	" 719-6	324.1	73.2	58,300	"	"	"	"
16	"	강동구 둔촌동 88-15	28	28	28,000	"	도시계획사업 (주택조합)	도시계획사업시행자(산동 인화개발(주)경매조합)	지방계정별시행령 제95조 항2호
17	대	송파구 풍납동 401-i	560.1	560.1	664,120	"	"	(한포세무서 직장주택 조합의 15개 조합)	"
18	학교용지	서초구 방배동 2727	4,635	4,635	1,265,360	"	서초권자립학교등학교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방계정별시행령 제 95조항1호
19	"	" 2728	783	783	213,760	"	"	"	"
20	임야	" 산132	6,612	2,143	64,300	"	"	"	"
21	"	" 산135	6,612	3,919	117,600	"	"	"	"
22	대지	과천시 문원동 15-10	140	140	23,800	"	공용,공공용	과천시	"
23	"	" 15-21	170	170	28,900	"	"	"	"
24	"	" 15-22	244	244	41,480	허반기	공용,공공용	"	"
25	"	" 15-33	270	270	45,900	"	"	"	"
26	대	" 15-34	296	296	50,400	"	"	"	"
27	"	" 15-42	200	200	34,000	"	"	"	"
28	"	" 15-44	146	146	24,900	"	"	"	"
29	"	" 15-47	146	146	24,900	"	"	"	"
30	"	" 15-97	593	593	100,900	"	"	"	"
31	"	" 15-147	118	118	20,100	"	"	"	"
32	"	" 15-160	248	248	42,200	"	"	"	"
33	"	" 15-161	248	248	42,200	"	"	"	"
34	"	" 15-162	248	248	42,200	"	"	"	"
35	"	" 15-163	248	248	42,200	"	"	"	"

(단위: 면적 m², 금액: 천원)

일련 번호	제 산 의 표 시			매각대상 면 적	추정가액 (공시지가 기준)	매각 시기	매각사유	매 수 자	비 고
	지목	소 계 지	일단의면적						
36	대	과천시 문원동 15-164	248	248	42,200	허반기	공용, 공공용	과천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1호
37	"	" 15-165	242	242	41,200	"	"	"	"
38	"	" 16-15	68	68	11,600	"	"	"	"
39	"	" 16-16	99	99	61,900	"	"	"	"
40	"	" 115	367	367	62,400	"	"	"	"
41	"	" 115-1	134	134	22,800	"	"	"	"
42	"	" 115-2	146	146	24,800	"	"	"	"
43	"	" 115-3	218	218	37,100	"	"	"	"
44	"	" 115-4	254	254	43,200	"	"	"	"
45	"	" 115-21	154	154	43,200	"	"	"	"
46	"	" 115-27	166	166	28,220	"	"	"	"
47	"	" 115-28	166	166	28,220	"	"	"	"
48	"	" 115-30	160	160	27,200	"	"	"	"
49	"	" 115-31	160	160	27,200	"	"	"	"
50	"	" 115-32	240	240	40,800	"	"	"	"
51	"	" 115-33	234	234	39,800	"	"	"	"
52	"	" 115-36	132	132	22,500	"	"	"	"
53	"	" 115-37	132	132	22,500	"	"	"	"
54	"	" 115-38	86	86	14,620	"	"	"	"
55	"	" 115-45	194	194	33,000	"	"	"	"
56	"	" 115-69	234	234	39,800	"	"	"	"
57	"	" 115-70	240	240	40,800	"	"	"	"
58	"	" 115-71	240	240	40,800	"	"	"	"
59	"	" 115-72	234	234	39,800	"	"	"	"
60	"	" 115-73	242	242	39,800	"	"	"	"
61	"	" 115-74	248	248	42,200	"	"	"	"
62	"	" 115-75	248	248	42,200	"	"	"	"
63	"	" 115-76	242	242	41,200	"	"	"	"
64	"	" 115-77	242	242	41,200	"	"	"	"
65	"	" 115-78	248	248	42,200	"	"	"	"
66	"	" 115-79	248	248	42,200	"	"	"	"
67	"	" 115-80	242	242	41,200	"	"	"	"
68	"	" 115-82	584	584	99,300	"	"	"	"
69	"	" 115-87	218	218	37,100	"	"	"	"
70	"	" 115-88	224	224	38,100	"	"	"	"
71	"	" 115-219	132	132	22,500	"	"	"	"
72	"	" 115-435	390	390	63,300	"	"	"	"
73	"	" 115-379	132	132	22,500	"	"	"	"
74	"	과천시 과천동 378-19	475	475	80,000	"	"	"	"

(단위: 면적 m ² , 금액: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대상 면 적	추정가액 (공식지가 기준)	매각 시기	매각사유	매 수 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면적						
75	"	송파구 중남동 310-3	4,962	2,500	1,000,000	"	취수장 부지	성남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2항20호
76	학교용지	성북구 삼선동2가 294-3	1,769	1,769	1,592,100	"	학교교내 부지	한성대학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2호
77	"	" 294-4	167.4	167.4	150,660	"	"	"	"
78	"	" 389-1	3,031.3	3,031.3	2,728,200	"	"	"	"
79	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29-2	69.8	69.8	168,916	"	점 유	김우영	"
80	"	" 29-4	44	44	106,480	"	"	"	"
81	"	노원구 상계동 197-1	141	141	56,400	"	건축부적합토지	인접토지 소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7호
82	"	종로구 필운동 175-4	22.6	26.6	25,270	"	"	"	"
83	"	강동구 고덕동 312-5	517.5	517	517,600	"	"	"	"
84	"	강서구 가양동 422-53	94	94	94,000	"	"	"	"
85	"	강서구 가양동 68-2	86	86	57,190	"	"	"	"
86	"	구로구 구로동 392-50	31	31	24,800	"	"	"	"
87	"	" 390-179	45	45	36,000	"	"	"	"
88	"	" 394-20	44	44	39,000	"	"	"	"
89	임야	구로구 시흥동 산28-9	46	46	5,530	"	"	"	"
90	대	영등포구 대림동 1025-94	22	22	22,000	"	"	"	"
91	"	과천시 문원동 115-89	440	440	74,800	"	철거 이주민	김광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8호
92	"	" 115-90	224	224	38,100	"	"	"	"
93	"	" 115-93	218	218	37,100	"	"	"	"

<p style="text-align: center;">公有財産 管理計劃 關聯 規定</p> <p>○ 地方自治法 第35條(地方議會議決 事項)</p> <p>① 地方議會는 다음事項을 議決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第6號-重要財産의 取得·處分</p> <p>○ 地方財政法 第77條(公有財産의 管理計劃)</p> <p>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所管의 豫算과 事業豫定에 따라 每年 公有財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에 관한 計劃을 樹立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p> <p>○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84條(公有財産의 管理計劃)</p>	<p>① 法 第7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의 管理計劃에 관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은 때에는 地方自治法 第35條 第1項 第6號의 規定에 의한 重要財産의 取得·處分에 관한 地方議會 議決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 서울特別市 公有財産 管理條例 第37條(公有財産의 管理計劃)</p> <p>① 市長은 地方財政法 第77條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 管理計劃을 樹立하여 每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公有財産 管理計劃을 變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市有財産의 賣却 關聯規程</p> <p>○地方財政法 施行令 第95條(雜種財産의 賣却)</p> <p>② 雜種財産은 一般競爭入札에 의하여 賣却한다.</p> <p>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使用하고자 할때 7. 建築法의 規程에 의한 垜地面積의 최소한도에 未達하는 土地 또는 位置와 形態가 建築敷地로 適合하지 아니한 土地를 그 隣接土地所有者에게 賣却할 때 8.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公共事業으로 인하여 發生한 撤去住民에게 住居用으로 財産을 賣却할 때. 20. 都市計劃事業으로 그 用途가 指定된 財産을 都市計劃事業 施行者에게 賣却할 때. 24. 財産의 位置 形態 用途등으로 보아 一般競爭入札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契約의 目的 또는 性質上 隨意契約에 의하는 것이 不可避한 경우로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그 內容 및 範圍를 정한 때. <p>(※위 條項 중 2~6, 9~19, 21~23項 規定은 省略함)</p> <p>○서울特別市 公有財産 管理條例</p> <p>第39條(隨意契約 賣却 對象 財産의 範圍)</p> <p>영 第95條 第2項 第24號의 規定에 의하여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는 財産의 內容 및 範圍는 다음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81年 4月 30日 以前부터 地方自治團體의 所有가 아닌 建물이 있거나 特定建築物 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規程에 의하여 竣工認可를 貰한 建물이 있는 일단의 小規模 土地(特別市 및 直轄市 地域에서는 200m²以下, 市地域에서는 300m²以下, 其他地域에서는 400m² 	<p>이하의 토지)를 그 建物 所有者에게 賣却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同一人 所有의 私有土地 사이에 位置하거나 既存의 工業團地등 産業施設 敷地上에 위치한 土地를 私有土地 所有者나 산업시설 所有者에게 賣却하는 경우(土地境界線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경우에 한한다) <hr/> <p>5. 都市計劃(案)의 議會意見聽取의 件 (11時 52分)</p> <p>○議長 金璫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都市計劃 決定에 대한 議會意見 聽取의 件 15件을 一括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議長 金璫會 都市整備委員會 金錫判議員 나오셔서 審査經過와 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p> <p>(場內騷亂)</p> <p>조용히 해 주세요.</p> <p>○金錫判議員 開院이래 本議員은 처음 단상에 서서 여러 議員님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좀 자리를 진정하셔서 本 常任委員會에서 올라온 提案說明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p> <p>本議員은 都市整備委員會 所屬 民主黨 幹事 金錫判입니다. 오늘 開院이래 단상에서 처음 뵈게 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오늘 都市計劃案 上程전에 여러 同僚議員들께 두가지 문제를 事前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道理일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添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깊이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議會에서 크고 작은 都市計劃案에 대해서 그간 여러 件을 審議하고 議決해 왔습니다. 이것은 都市計劃法 第12條第1項에 都市計劃 審議決定에 있어서 地方議會에 意見を 聽取할 수 있도록 規定이 돼있었습니다.</p> <p>그러나 지난 20일 本會議에서 都市計劃法의</p>
---	---